

[별표 3]<신설 1994.9.24>

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제11조제4호 마목관련)

구분	시 설 기 준	비고
1.유출방지턱	가.저장시설의 최대용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유류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유출방지턱의 높이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H \times (A - a) \geq 0.5 \times Q$ ·H : 유출방지턱의 높이 ·A : 방지턱내의 바닥면적 ·a : 방지턱내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바닥면적 ·Q : 저장시설의 최대저장용량 다.방지턱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바닥처리	가.바닥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바닥에는 모래 또는 자갈등 흡수성이 강한 재료를 10센티미터이상 깔아야 한다.	
3.기타	가.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유류공급 또는 주유등을 방지턱안에서 할 수 있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